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89-1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차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Chapter 1 노인복지일반현황

1-1 2022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 3
1-2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 76
1-3 2022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 78

Chapter 2 노인요양

2-1 노인주거복지시설 ····· 81
2-2 노인의료복지시설 ····· 116
2-3 재가노인복지시설 ····· 154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200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280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55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 358
2-8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 516

Chapter 3 치매 및 건강보장

3-1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 521
3-2 광역치매센터 운영 ····· 528
3-3 치매 안심센터 운영 ····· 529
3-4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 533
3-5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 534
3-6 치매공공후견사업 ····· 535
3-7 노인실명예방사업 ····· 536
3-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549
3-9 노인 건강진단 ····· 558
3-10 치매극복의 날 행사 ····· 573

CONTENTS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Chapter 4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3
4-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22
4-3 경로당 운영 ····· 31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 77
4-5 노인교실 ····· 92

Chapter 5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99
5-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134
5-3 양로시설사물인터넷(IoT)활용비대면돌봄시범사업 ····· 138
5-4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 150
5-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 159
5-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194
5-7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 211
5-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231
5-9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 236

Chapter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6-1 어버이날 행사 ····· 241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 244
6-3 경로우대제 운영 ····· 247

Chapter 7 장사시설 설치·운영

7-1 장사정책 추진 ····· 251
7-2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 254
7-3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 266
7-4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지침 ····· 287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1

노인복지일반현황

1-1 2022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1-1 2021년 주요 사업 변경내용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주요 내용**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11.52%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주요 내용**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12.27%	- 보험료 변동
2-1 노인주거복지시설	**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입소대상** 2)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21도 3월에 2021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20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21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1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입소대상** 2)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22년도 3월에 2021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21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22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2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시설운영비 지원** 가. 종사자인건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요양보호사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인건비 및 운영비(지방이양시설)** 가. 종사자인건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삭제 ● 요양보호사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지방이양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사무원, 관리원, 요양보호사, 위생원은 시설형편에 따라 통합운영가능	● 사무원, 관리원, 요양보호사, 위생원은 시설형편에 따라 통합운영가능 →삭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바, 각지자체별 조례 재정등을 통해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근로기준법」따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2021년 하반기에 채용한 교대인력(교대제)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하며, 그 외 주52시간 시행에 필요한 인력 추가 확보 및 주52시간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지원 - 교대제 인력 및 추가 확보인력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2의 양로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을 채용하도록 하여 주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 위기준을 참고하여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할수 있음 〈휴일근무수당〉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2022.1.1.)됨에 따라 2022년 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지급	- 지방이양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관리운영비에 대한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나.관리운영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다.프로그램사업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나. 관리운영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삭제 ※지자체 필요시 추가 별도운영비 지원가능 다.프로그램사업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삭제 ※지자체 필요시 추가 별도운영비 지원가능	사용범위 확대 - 지방이양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국고지원의 주요 운영지침** ● 생략 **6.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 ● 생략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국고지원의 주요 운영지침** ● 삭제 **5. 후원금 관리** ● 삭제 ※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의 관리 참조하여 집행 및 관리	- 지방이양에따른 변경사항 반영
	Ⅲ. 양로시설(유료)설치 및 운영 **2. 설치 및 운영** 차. 운영기준 - 운영간담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설치하지 않을수 있으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운영위원회 대신 운영간담회만 설치가능)	**Ⅲ. 양로시설(유료)설치 및 운영** **2. 설치 및 운영** 차. 운영기준 - 운영간담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설치·운영가능) ※ 거주자 대표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것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별표3 반영
	Ⅳ 노인복지주택설치및운영기준 **2.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카. 운영기준	**Ⅳ 노인복지주택설치및운영기준** **2.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카. 운영기준 ※ 거주자 대표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것(신설)	
2-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의 반영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5.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입소자 조치 사항**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생략)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생략) - (생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현행과 같음)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의 반영
2-3 재가노인복지시설	- 불필요하게 월한도액까지 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의 상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한 후 승인(필요시 급여내역 조정)	- 불필요하게 월한도액까지 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의 상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한 후 승인(필요시 급여내역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반영
	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5 이용절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2) (생략) 3) 시·군·구는 이용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5 이용절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2) (현행과 같음) 3) 시·군·구는 이용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의2	- 별지 서식 오류 수정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서식)를 작성 하여 송부(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첨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서식)를 작성 하여 송부(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첨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므로, 기초 수급 자는 「수급자증명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이므로, 기초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의 반영
	5) (생략) 6)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7~9) (생략) 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생략) ● (생략)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5) (현행과 같음) 6)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7~9) (현행과 같음) 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의 반영
	7 행정사항 가~라 (생략) 마. 신고수리 1)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7 행정사항**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신고수리 1)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 반영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교부	서식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교부	
	II 방문요양서비스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다. (생략) 라. 인력기준 (표 생략) ● (생략)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II 방문요양서비스**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인력기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공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 신축 : 국비80%, 지방비20%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공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 국비 80%, 지방비 20% (단, 서울시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50%)	· 서울시 예외 사항
	4. 지원방향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자부담비율 의무화 ○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적이 없는 법인 : 자부담 없음 ○ 최근 5년내 1회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 ○ 최근 5년내 2회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7% 이상 자부담 ○ 최근 5년내 3회 이상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치매전담형시설 전환(증개축·개보수)의 경우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	**4. 지원방향**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자부담비율 의무화 ○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적이 없는 시설 : 자부담 없음 ○ 최근 5년내 1회 지원받은 시설 : 총 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 ○ 최근 5년내 2회 지원받은 시설 : 총 사업비의 7% 이상 자부담 ○ 최근 5년내 3회 이상 지원받은 시설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단, 국가정책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의 경우 지원횟수에서 제외 ※ 치매전담형시설 전환(증개축·개보수)의 경우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	- 법인→시설로 변경하여 지원범위 확대
	(신설)	● 전년도 지원 시설 및 최근 3년간 3회 이상 기능보강 지원을 받은 시설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 등 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순위로 선정할 것을 권고 ※ 단, 안전상의 문제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제출 ● 시군구 선정위원회 및 시도선정위원회 모두 거쳐 선정할 것을 권고	- 무분별한 지원 신청 방지를 위한 지자체 건의 사항 반영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5. 사업내용 (신설)	**5. 사업내용** 20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지침 붙임	- 단가변동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11. 주의사항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인인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지원 동일유형 시설에 한함)간 전환은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 시·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인프라 현황, 각 시설의 수급실태, 시설폐지 이후 대책 등을 감안하여, 시설전환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11. 주의사항**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인인 노인복지시설 간 전환은 가능하다. - 이 경우 해당 시·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인프라 현황, 각 시설의 수급실태, 시설폐지 이후 대책 등을 감안하여, 시설전환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예) 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전환 (단, 폐업 후 설치 신고 절차 필수)	- 시도별 상황에 맞춰 사업 진행 필요
	2) 일반 시설물 ● 단순 개보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시설이 폐지하는 경우 시설공사비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받음 - 이 때 장비보강의 경우는 조달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2) 일반 시설물 ● 단순 개보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시설이 폐지하는 경우 시설공사비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받음 - 이 때 장비보강의 경우는 조달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월별계산의 경우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며, 반납 시 폐업의 사유에는 예외 없음	- 해석 상 모호함 해소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2. 제정 배경** (중략)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Ⅰ.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2. 제정 배경** (중략)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추가)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의 장 및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함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 노인학대 신고 근거 추가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중략) ● 노인학대 신고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 경찰(112)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중략) ●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경찰(112),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앱	- 신고체계 다양화에 따른 문장 수정 - 보건복지콜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 노인학대 신고앱 개발에 따른 내용 추가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학대예방사업 업무 체계도 〉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학대예방사업 업무 체계도 〉	- 그림 내 110 추가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2) 시·도 (중략)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가정의 달로 함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2) 시·도 (중략)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가정의 달로 함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의 날 내용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3) 시·군·구 (중략)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추가) ● (추가) ●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통보(시·군·구 → 광역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대표자명, 시설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3) 시·군·구 (중략)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담당 공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동행 요청시 반드시 참석 해야 함 ●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동안 공표하여야 함 (이하 생략) ●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통보 해야함	- 담당공무원 동행 근거 추가 - 시설학대 발생 시 담당공무원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참석 근거 추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수정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시·군·구청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함	● 시·군·구청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함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대표자명, 시설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 처분 내용 등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신고된 시설의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학대사례 판정, 학대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대표자명, 시설명, 시설장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 처분 내용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명확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8에 따라 수정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5) 노인복지시설 ● (중략)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5) 노인복지시설 ● (중략)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하며,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협조,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 보호자 고지 추가 등 - 법령 오기 수정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3항). 〈표〉 추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 〈표〉"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서20 ● (대상)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관련기관 ● (제한기간)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19.6.12일부터 적용) - 법률 개정 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제15880호)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취업제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39조의6제2항)	- 관련 법 조문으로 수정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중략) ※ 노인복지법 55조의 3에 따라 현장조사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중략)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장 수정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중략) 〈시설 입소 노인 학대사례 업무진행도〉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중략) 〈시설 입소 노인 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그림 내 110 추가 - 업무절차 명칭 수정 (사례접수→신고접수)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중략)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중략)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 보건복지콜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 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신고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전화 110),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가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중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을 위반 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중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삭제)	- 구체적인 법령 추가 및 그에 따른 내용 수정 - 2) 조사와 사정으로 이동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2) 조사와 사정 〈노인복지시설〉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추가)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2) 조사와 사정 〈노인복지시설〉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 (삭제) 현장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역할 임 - 노인학대 발생시 협조사항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작 또는 삭제하면 안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학대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생략)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작 또는 삭제하면 안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학대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생략)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조사 또는 질문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삭제)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 (삭제)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 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 수정 - 문장수정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학대의심 사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 해야 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학대의심 사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 해야 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 (삭제) "3) 학대사례의 판정"으로 이동 - 추가조사 관련 사항 추가 - (삭제)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학대사례의 판정"으로 이동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3) (추가)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3) 학대사례의 판정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에 따른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의 조사 등을 통해,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조사와 사정 내용 이동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추가 〉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복지시설 〉	- 역할에 따른 단락 구분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생략) •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생략) •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삭제) 행위자 개입은 노보의 역할 - 행위의 주체 명확화 및 문장 수정 및 학대행위자 조치 사항 삭제 (노보역할)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 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 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삭제) 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는 노보역할 - 행위의 주체 명확화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추가 〉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역할에 따른 단락 구분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생략) •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생략)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행위의 주체 명확화 - 행정조치 대상 수정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4) 평가와 사후조치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 위원 등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4) 평가와 사후조치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 위원 등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안전이 확보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 (삭제) 학대발생 노인에 대한 사례평가는 노보역할 - 문장수정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종결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학대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td><td>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학대 발생 시설의 장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과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권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인권교육(방문교육)을 받아야 한다.</td><td>- 학대발생 시설 인권교육 관련 내용 추가</td></tr>
<tr><td></td><td>〈신설〉</td><td>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1 인권침해 행위로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 성폭력(「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로서 개별법률은 이의 예방, 신고 및 사건처리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책무 등을 규정
<table>
<tr><th>'성희롱'의 개념</th><th>'성폭력'의 개념</th></tr>
<tr><td>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td><td>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 (관련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바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제7호,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마목 등</td></tr>
</table>
● 개별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 (노인)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td><td>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침 내용 추가</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필요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등 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짐.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 홍보 · 교육 및 연구 · 이용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 · 공정한 구제 조치** ·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사업주의 책무 -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사업주는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가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종사자의 책무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및 제5조) ***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사설장의 책무** **1)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임·직원의 채용 시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취업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임 등**의 조치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의2 제2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함.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의 배포 · 게시, 전자우편 발송 또는 게시판에 공지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 **〈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봄.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3) 시설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종사자 간 또는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 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 지침 마련 **〈 성희롱 예방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창구* 설치·운영** * 사이버 신고 창구의 설치, 고충처리기구 등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과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6조) *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고충상담원 지정 및 독립성 있는 고충처리기구 구성·운영 권고 * 성희롱 상담 및 조사절차 추진 등을 위한 전담 직원을 두고, 고충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기구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및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조치** **- (사업주의 의무)** **·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당하여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 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 사업주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조치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이용 계약서,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서 등에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퇴거 조치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 다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은 이용자의 인지능력,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바람직. -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자목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 조치** - 사회복지서설 이용 계약서,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서 등에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퇴거 조치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 다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은 이용자의 인지능력,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바람직. - 이용자 이용수칙 등을 이용자가 상시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 또는 비치 **4)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종사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성희롱 사건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처우**(예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예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업무 관련자들의 **비밀 보호 유지 등 2차 피해의 발생 방지** ·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피해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누설 금지 ●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 - **(피해자 보호조치)** 시설장은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종사자에 대한 조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즉시 해당 직위로부터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호자 통지)** 피해자의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의 발생을 즉시 알리고, 관련 구제 절차 및 외부 조력기관*에 대한 안내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법률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조사 협조)** 수사기관 또는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 협조 - **(비밀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관련자들의 **비밀 보호 유지 등 2차 피해의 발생 방지** ·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피해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누설 금지 ●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 **(관련 법률)** 시설 내에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발생은 「민법」,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피해자 보호조치)** 시설장은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즉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신고의무)**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아니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또는 개별 법령이 피해자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 **(보호자 등에게 사실 안내)** 피해자의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의 발생을 즉시 알리고, 관련 구제 절차 및 외부 조력기관*에 대한 안내. * 법률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조사 협조)** 수사기관 또는 전문 지원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 협조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인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예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4 종사자의 의무** ● **기관장과 동일하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함.** ● **시설 내에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함.** **5 이용자의 의무** ●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용자 이용수칙 등을 명확히 주지하며, **시설 내에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함.**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주요 내용 가.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주요 내용 가.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오타 수정
	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반영
	[그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그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반영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11.52%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12.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반영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 근거법조항 오류 수정
	Ⅰ-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나) 서비스별 시설·인력기준 (생략) [주·야간보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생략) ● 인력기준 (생략) -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 으로 운영가능하며,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이용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단기보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인력기준 (생략) -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Ⅰ-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나) 서비스별 시설·인력기준 (현행과 같음) [주·야간보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현행과 같음) ● 인력기준 (현행과 같음) -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하며,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이용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단기보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인력기준 (현행과 같음) -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 병설과 서비스 함께 제공의 의미 구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반영)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
다) 병용, 겸직규정
※ (생략)
● 겸직규정
<table>
<tr><th>병설 유형</th><th>공동 사용</th></tr>
<tr><td>•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 운영</td><td>•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 가능</td></tr>
<tr><td>• (생략)</td><td>• (생략)</td></tr>
<tr><td>• (생략)</td><td>• (생략)</td></tr>
<tr><td>• (생략)</td><td>• (생략)</td></tr>
<tr><td rowspan="2">• (생략)</td><td>• (생략)</td></tr>
<tr><td>• (생략)</td></tr>
<tr><td>• (생략)</td><td>• (생략)</td></tr>
<tr><td>•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td><td>•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단,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td></tr>
<tr><td>•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td><td>• 요양보호사 상호 겸직 가능</td></tr>
<tr><td>•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td><td>• (생략)
• (생략)</td></tr>
</table>
● 병용규정
<table>
<tr><th>병설 유형</th><th>공동 사용</th></tr>
<tr><td>• (생략)</td><td>• (생략)</td></tr>
<tr><td>• (생략)</td><td>• (생략)</td></tr>
<tr><td>• (생략)</td><td>• (생략)</td></tr>
<tr><td>•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td><td>• (생략)</td></tr>
</table>
</td><td>
다) 병용, 겸직규정
※ (현행과 같음)
● 겸직규정
<table>
<tr><th>병설 유형</th><th>공동 사용</th></tr>
<tr><td>•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 운영</td><td>•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차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가능</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삭제)</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td><td>• (삭제)</td></tr>
<tr><td>•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td><td>•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td></tr>
</table>
● 병용규정
<table>
<tr><th>병설 유형</th><th>공동 사용</th></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사업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td><td>• (현행과 같음)</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가. 복지용구 급여품목('21.2월 기준)
1) 구입 품목(10종)
① 이동변기 (18) 5년
② 목욕의자 (14) 5년
③ 성인용보행기 (48) 5년
④ 안전손잡이 (69) -
⑤ 미끄럼방지용품 (86) -
⑥ 간이변기 (9) -
⑦ 지팡이 (40) 2년
⑧ 욕창예방방석 (14) 3년
⑨ 자세변환용구(16) -
⑩ 요실금팬티(27) -
2) 대여 품목(6종)
① 수동휠체어 (63) 5년
② 전동침대 (78) 10년
③ 수동침대 (15) 10년
④ 이동욕조 (5) 5년
⑤ 목욕리프트 (1) 3년
⑥ 배회감지기 (9) 5년
3) 구입 또는 대여 품목(1종)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34) 3년
② 경사로(실내용) (11) 2년
경사로(실외용) (5) 8년
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원/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다. 복지용구 제품 : 562개 제품 ('21.2월 기준)</td><td>가. 복지용구 급여품목('21.9월 기준)
1) 구입 품목(10종)
① 이동변기 (18) 5년
② 목욕의자 (16) 5년
③ 성인용보행기 (50) 5년
④ 안전손잡이 (75) -
⑤ 미끄럼방지용품 (93) -
⑥ 간이변기 (8) -
⑦ 지팡이 (36) 2년
⑧ 욕창예방방석 (15) 3년
⑨ 자세변환용구 (17) -
⑩ 요실금팬티(34) -
2) 대여 품목(6종)
① 수동휠체어 (65) 5년
② 전동침대 (85) 10년
③ 수동침대 (15) 10년
④ 이동욕조 (5) 5년
⑤ 목욕리프트 (0) 3년
⑥ 배회감지기 (8) 5년
3) 구입 또는 대여 품목(1종)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32) 3년
② 경사로(실내용) (20) 2년
경사로(실외용) (5) 8년
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원/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다. 복지용구 제품 : 597개 제품 ('21.9월 기준)</td><td>-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반영</td></tr>
<tr><td></td><td>II-3.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시 자료 이관
1. 법적근거
● (생략)
2. 이관 대상 및 절차
가. 이관 대상 기관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
- 단, 휴업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td><td>II-3.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 비갱신 시 자료이관
1. 법적근거
● (현행과 같음)
2. 이관 대상 및 절차
가. 이관 대상 기관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
- 단, 휴업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으로 지정 갱신을 하지 않아 지정 유효 기간 만료된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자료이관 기술 등</td></tr>
</table>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 직접 보관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은 자료이관 대상

● (신설)
● 이관 제외기관
<table><tr><th>구분</th><th>자료이관 대상기관</th><th>자체보관 또는 자료이관 대상</th></tr><tr><td>이관 사유</td><td>•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기관
•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기관</td><td>• 장기요양기관 자진휴업</td></tr></table></td><td>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 직접 보관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은 자료이관 대상
● 지정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
● 이관 제외기관
<table><tr><th>구분</th><th>자료이관 대상기관</th><th>자체보관 또는 자료이관 대상</th></tr><tr><td>이관 사유</td><td>•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 지정 유효기간 만료
•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기관
•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기관</td><td>• 장기요양기관 자진휴업</td></tr></table></td><td></td></tr>
<tr><td></td><td>나. 이관 대상 자료
(생략)
다. 이관 시기 :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라. (생략)</td><td>나. 이관 대상 자료
(현행과 같음)
다. 이관 시기
● 휴·폐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라. (현행과 같음)</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정 갱신을 하지 않아 지정 유효기간 만료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이관 기술 등</td></tr>
<tr><td></td><td>3. 기타 사항
● 휴·폐업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자료이관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 조문</th></tr><tr><td>법 제36조제1항·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td><td>법 제69조 제4호</td></tr></table>● (생략)</td><td>3. 기타 사항
● 휴·폐업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자료이관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 조문</th></tr><tr><td>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td><td>법 제69조 제1항 제4호</td></tr></table>● (현행과 같음)</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3 반영</td></tr>
<tr><td></td><td>II-4.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2. 행정처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td><td>II-4.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2. 행정처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반영</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1. 일반기준 가~다. (생략)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생략) 나. (생략) 1) 1차 위반 시의 기준 :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표생략)	1. 일반기준 가~다. (생략)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1차 위반 시의 기준 :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표생략)	
	비 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4. (생략) 2) (생략) 다. (생략) **3. 행정처분절차** 가. (생략) 나. 시·군·구 행정사항 (생략)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비 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3. 행정처분절차**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군·구 행정사항 (현행과 같음)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의 반영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문서번호</th><th rowspan="2">통보일자</th><th rowspan="2">장기요양기관기호</th><th rowspan="2">기관명</th><th rowspan="2">소재지</th><th colspan="2">처분대상종사자</th><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청문일자</th><th rowspan="2">처분일자</th><th colspan="2">처분내용</th><th rowspan="2">행정처분기간(장기요양급여제공제한기간)</th><th rowspan="2">처분근거법률</th></tr>
<tr><th>성명</th><th>주민등록번호</th><th>행정처분</th><th>과태료부과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문서번호</th><th rowspan="2">통보일자</th><th rowspan="2">장기요양기관기호</th><th rowspan="2">기관명</th><th rowspan="2">소재지</th><th colspan="2">처분대상종사자</th><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청문일자</th><th rowspan="2">처분일자</th><th colspan="2">처분내용</th><th rowspan="2">행정처분기간(장기요양급여제공제한기간)</th><th rowspan="2">처분근거법률</th></tr>
<tr><th>성명</th><th>주민등록번호</th><th>행정처분</th><th>과태료부과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r><td></td><td>작성 요령
1.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속한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처분대상 종사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td><td>작성 요령
1.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속한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처분대상 종사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td><td>- 오타 수정</td></tr>
<tr><td></td><td>별첨 - 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1~11. (생략)
12. 인건비 지출 관리
가. 인건비 지출
● (생략)
● (생략)
<table>
<tr><th>구분</th><th>장기요양요원</th><th>인건비 지출비율(%)</th></tr>
<tr><td>노인요양시설</td><td rowspan="4">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60.5</td></tr>
<tr><td>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d><td>65.0</td></tr>
<tr><td>주야간보호</td><td>48.3</td></tr>
<tr><td>단기보호</td><td>58.5</td></tr>
<tr><td>방문요양</td><td>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td><td>86.6</td></tr>
<tr><td>방문목욕</td><td>요양보호사</td><td>49.3</td></tr>
<tr><td>방문간호</td><td>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td><td>59.5</td></tr>
<tr><td colspan="3">※ 인건비 지출비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를 참고</td></tr>
</table>
</td><td>별첨 - 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1~11. (생략)
12. 인건비 지출 관리
가. 인건비 지출
● (생략)
● (생략)
<table>
<tr><th>구분</th><th>장기요양요원</th><th>인건비 지출비율(%)</th></tr>
<tr><td>노인요양시설</td><td rowspan="4">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61.1</td></tr>
<tr><td>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d><td>65.5</td></tr>
<tr><td>주야간보호</td><td>48.7</td></tr>
<tr><td>단기보호</td><td>59.0</td></tr>
<tr><td>방문요양</td><td>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td><td>86.6</td></tr>
<tr><td>방문목욕</td><td>요양보호사</td><td>49.8</td></tr>
<tr><td>방문간호</td><td>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td><td>60.4</td></tr>
<tr><td colspan="3">※ 인건비 지출비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를 참고</td></tr>
</table>
</td><td>-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란 고시 개정 반영</td></tr>
<tr><td></td><td>〈작성요령〉
* 시·군·구 담당자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참고하여 작성</td><td>〈작성요령〉
* 시·군·구 담당자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참고하여 작성</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반영</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지방자치단체 부담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생략)	**지방자치단체 부담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현행과 같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반영
	〈붙임 2〉 1.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시설 OOO센터(고용주)와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__년 _월 _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모두 작성함. [예] 근로계약기간: 20__년 _월 _일부터 20__년 _월 _일까지 _년으로 한다. 2. 근무장소 : _____ 3. 업무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에 명시된 범위로 정한다. 4.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⑴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형태 ⑵ 근무시간 : 주5일,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붙임 2〉 1.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시설 (내용 전체 수정_수정할 내용 별도 첨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① 주간근무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② 야간근무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③ 3교대 ・1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2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3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④ 기타 복합형태 ・___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___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5. 근무일 및 휴일 : 매주 __일 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노동절(5/1)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명절,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함.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개시일은 다음과 같음.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2년 1월 1일 6. 임금 ⑴ 월급 : _____원 ⑵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_____원 (□ 주휴 별도지급 여부 □ 주휴 포함) ② 기타급여 : □ 있음 □ 없음 ・___수당 _____원, ___수당 _____원, ___수당 _____원 ③ 초과/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⑶ 임금지급일 : 매월 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⑷ 임금지급방법 : □ 직접지급 □ 계좌이체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 ⑴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이에 따른다.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임의 가입대상임. 단, 고용보험의 경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함. ⑵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는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며, 그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⑶ 고용주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9. 퇴직금 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⑶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권리와 의무 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오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거절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⑵ 노동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와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고용주는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법령에 명시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⑶ 노동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⑷ 노동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고용주의 요구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과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편성한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다만, 사전 요청에 의해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⑸ 노동자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에 대하여 그 가족의 학대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한다. ⑹ 고용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라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⑺ 고용주와 노동자는 월1회 회의 또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⑻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두기 1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근무한다. 후임자가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⑼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⑽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한다. 11.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노동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12.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재가(단시간) OOO센터(고용주)와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__년 __월 __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모두 작성함.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재가(단시간) (내용 전체 수정_수정할 내용 별도 첨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예] 근로계약기간: 20__년 _월 _일부터 20__년 _월 _일까지 _년으로 한다. 2. 근무장소 : _____ 3. 업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에 명시된 급여 범위로 정한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외 행위는 부당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지한다. * 급여 외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예: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 지원, 명절음식 장만, 반려동물 산책 등) 4.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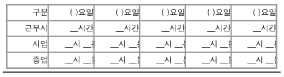 5. 휴일 : 주휴일 매주 __요일, 노동절(5/1)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명절,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함.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개시일은 다음과 같음.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2년 1월 1일 6. 임금 ⑴ 월급 : _____원 ⑵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시급 : _____원 ② 주휴수당 : _____원 ③ 기타급여 : □ 있음 □ 없음 · ___수당 _____원, ___수당 _____원, ___수당 _____원 ④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⑶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⑷ 임금지급방법 : □ 직접지급 □ 계좌이체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 ⑴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이에 따른다.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임의 가입대상임. 단, 고용보험의 경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함. ⑵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는 근로개시일 또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는 근로계약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며, 그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9. 퇴직금 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⑶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권리와 의무 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오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거절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⑵ 노동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와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고용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법령에 명시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⑶ 노동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⑷ 노동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고용주의 요구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과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편성한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다만, 사전 요청에 의해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⑸ 노동자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에 대하여 그 가족의 학대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한다. ⑹ 고용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라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⑺ 고용주와 노동자는 월1회 회의 또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⑻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두기 15일 전에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근무한다. 후임자가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⑼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⑽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한다. 11.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노동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12.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2. 표준급여명세서
[예시] 급여명세서 양식 –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포함
<table>
<tr><td colspan="8">2021년 O월분 급여명세서</td></tr>
<tr><td colspan="2">사번</td><td colspan="2"></td><td colspan="2">이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부서</td><td colspan="2"></td><td colspan="2">직위</td><td colspan="2"></td></tr>
<tr><td>근무시간</td><td>63</td><td rowspan="2">가산수당 반영시간 (h)</td><td>야간</td><td>휴일</td><td>특육</td><td colspan="2">가족요양</td></tr>
<tr><td>시급기준</td><td>9,500</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지급내역</td><td>지급액</td><td colspan="2">공제내역</td><td colspan="3">공제액</td></tr>
<tr><td>기본급여</td><td>474,390</td><td colspan="2">국민연금</td><td colspan="3">22,500</td></tr>
<tr><td>주휴수당</td><td>79,065</td><td colspan="2">건강보험</td><td colspan="3">22,730</td></tr>
<tr><td>연차수당</td><td>22,807</td><td colspan="2">장기요양</td><td colspan="3">830</td></tr>
<tr><td>식대보조</td><td>22,238</td><td colspan="2">고용보험</td><td colspan="3">4,730</td></tr>
<tr><td>포괄수당</td><td>-</td><td colspan="2">소득세</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2">주민세</td><td colspan="3">-</td></tr>
<tr><td>야간수당</td><td>-</td><td colspan="2">배상보험</td><td colspan="3">-</td></tr>
<tr><td>휴일수당</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특육수당</td><td>-</td><td colspan="2">기관부담(근속)</td><td colspan="3">-</td></tr>
<tr><td>가족요양수당</td><td>-</td><td colspan="2">기타정산(2)</td><td colspan="3">-</td></tr>
<tr><td>특별장려금</td><td>120,960</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장기근속수당</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업무촉진수당</td><td>31,500</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포상/격려금</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기타 정산금</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지급총액</td><td>750,960</td><td colspan="2">공제총액</td><td colspan="3">50,790</td></tr>
<tr><td>과세급여</td><td>728,722</td><td colspan="2">실지급액</td><td colspan="3">700,170</td></tr>
</table></td><td>2. 표준급여명세서
[예시] 급여명세서 양식 –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포함
(내용 전체 수정_수정할 내용 별도 첨부)</td><td></td></tr>
<tr><td rowspan="2">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td><td>3. 사업내용
표</td><td>3. 사업내용
표 교체</td><td></td></tr>
<tr><td>4. 유형별 예산기준
표</td><td>4. 유형별 예산기준
표 교체</td><td></td></tr>
<tr><td></td><td>●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시군구(1차), (~중략~) 3차 심사 및 승인</td><td>●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시군구(1차), (~중략~) 3차 심사 및 승인
* 필요시 시장형 신규사업은 3차 심사단계에서 현장점검 진행</td><td></td></tr>
<tr><td></td><td>● 시·도 협의체 운영협조 등</td><td>● 지역협의체 구성·운영협조 등</td><td></td></tr>
<tr><td></td><td>사업추진 실태 점검
- (~중략~)정산보고서 확인·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td><td>사업추진 실태 점검
- (~중략~)정산보고서 확인·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
- 주요 점검내용
·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결과 적정성
· 참여자 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선발기준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참여 확인 등)
· 참여자 관리(참여자 자격변동에 대한</td><td></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조치, 참여자 부적격·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등) · 참여자 교육 실적 등 · 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등 · 팀장 및 전담 보조인력 관리(업무분장, 수당지급 내역 등)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퇴직적립금 관리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적절성 등	
	- 결과 보고 • (생략) • (~중략~)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수록	- 결과 보고 • (생략) • (~중략~)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수록 표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 (반기별 1회)	●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 (반기별 1회) - 지역 내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자치단체 운영비 또는 관내 수행기관의 사업 부대경비 활용 가능	
	● 참여자 관리 (중략)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참여자 교육 등)을 권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참여자 활동 중점 관리	● 참여자 관리 (중략)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참여자 교육 등)을 권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참여자 활동 중점 관리 ※ 부대경비(사업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물품 교부 가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세부 운영방안 별도 안내	
	● 참여자 자격변동 등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중략)조치결과 입력	● 참여자 자격변동 등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중략)조치결과 입력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연금 보장 중지 여부, 차상위 계층 탈락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관련 변동 여부, 장기요양보험 책정 여부 등 · 사망, 교정시설 입·퇴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성명변경, 출·입국 등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수행기관(중략) - (중략)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수행기관(중략) - (중략)정산보고서 제출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항목 · 사업계획서 등록 및 관리,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현황 · 참여자 자격변동 관리 및 부적격·부정수급 조치사항 입력 · 참여자 교육 실적 · 참여자 사고발생 현황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인적사항 및 운영(예산집행 등) 현황 · 수요자 현황 및 수요처 등록 등 · 수행기관 정보 입력 및 현행화 ※ 시·군·구에서는 관할 수행기관의 실적 입력 항목을 매월 확인하고 마감 처리	
	● 종사자 교육(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교육 참석	● 종사자 교육(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교육 참석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비치대장 – 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보고(시·군·구) – 사업계획서 및 위탁관리 협약서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 해당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에 대한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 해당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타 기관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의 경우, 노인일자리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업무시스템에 해당 정보 등록 후 관련 서류는 파기 - 참여자별 선발기준표 및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 - 수요자, 수요처의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여자별 활동일지(출근부) - 사업단별 활동비(또는 임금) 대장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 참여자별 근로(도급)계약서(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시장형사업단) - 사업 자체운영 규정, 월별 사업추진 현황 정보공개서, 정산보고서, 자산대장(시장형사업단)	
	● 현장점검 -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 (시기) 2021년 6~10월	● 현장점검 -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 (시기) 2022년 6~10월	
	●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 (대상)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 수행기관 - (방법) 성과관리 지표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계량평가 후 정성평가 실시 - (시기) 2022년 1분기(계량평가), 2분기(정성평가) - (결과활용)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 성과관리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공지	
	● 2022년도 수요조사 - (내용)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필요인원 - (시기) 2021년 4~6월	● 2023년도 수요조사 - (내용)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필요인원 - (시기) 2022년 4~6월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구성·운영 주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광역자치단체 - (협의체 구성)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지역상황 고려), 지역 전문가(수행기관 대표 등) 등으로 구성 가능 ※ 운영 시 안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대표), 수행기관(대표) 등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수 있음 - (협의체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 - (협의체 주요역할) 기본과제 및 제도개선 협의, 긴급현안 대응 등	
	1. 공익활동 ●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 가능 ● (사업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1. 공익활동** ●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역상생활동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 가능 ● (사업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 :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참여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한 활동	지역상생활동 :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참여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한 활동	
	2. 재능나눔 활동	(삭제)	
	3. 사회서비스형 ● (사업정의)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2.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① 사회서비스형 ● (사업정의)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타 〈표 수정〉 붙임 4 ②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사업정의)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노인일자리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업·기관 등 ● (지원내용)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2만원×5개월 지원(연간 최대 1인당 160만원)	
	4. 시장형사업단	**3. 시장형사업단**	
	5. 취업알선형	**4. 취업알선형**	
	6. 시니어인턴십 표	**5. 시니어인턴십** * 표 수정	
	7. 고령자친화기업	**6. 고령자친화기업**	
4-2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나.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 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차별화된 노인 자원봉사 활동영역 마련 - 노인 공익활동, 재능나눔과 중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시 ● 위의 활동 우선 지원하되, 지역별 소요와 지역 내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과 중복되지 않게 활동 - 신규 전문노인자원봉사 활동 등 * 위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소요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내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클럽(봉사단) 활동 권장	● 차별화된 노인 자원봉사 활동영역 마련 - 노인 공익활동과 중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시 ● 위의 활동 우선 지원하되, 지역별 소요와 지역 내 공익활동과 중복되지 않게 활동 - 신규 전문노인자원봉사 활동 등 * 위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소요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내 공익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클럽(봉사단) 활동 권장	
	● 조직구성 : 봉사단(클럽)은 20 ~ 30명 내외로 구성 ● 봉사단(클럽)의 조직체계 - 봉사단(클럽)은 20~30명 내외로 조직 ● 지원봉사단(클럽)의 조건 ① 봉사단(클럽) 지도자 2명이 소정의 코치교육을 이수 ② 봉사단(클럽) 회원을 20~30명 내외로 확보	● 조직구성 : 봉사단(클럽)은 5 ~ 50명 내외로 구성 가능 ● 봉사단(클럽)의 조직체계 - 봉사단(클럽)은 5~50명 내외로 조직 ● 지원봉사단(클럽)의 조건 ① 봉사단(클럽) 지도자 2명이 소정의 코치교육을 이수 ② 봉사단(클럽) 회원을 5~50명 내외로 확보	
	6) 사업관리 ● 통계관리 - 봉사단(클럽)별 활동실적, 참여자 명단 등 각종 실적치를 월 1회 복지부 보고	6) 사업운영 및 실적관리 ● (사업 추진실적 입력 - 수행기관→위탁기관) 수행기관은 당월 활동실적을 익월 5일까지 노인일자리 업무 시스템에 매월 입력 ●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위탁기관 → 수행기관) 위탁기관은 익월 5일까지 수행기관의 실적을 확인 후 매월 활동 마감	
	2) 일 시 : 2021 하반기	2) 일 시 : 2022 하반기	
	6. 사업추진일정	6. 사업추진일정 표 수정 〈붙임 6〉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4-3 경로당 운영	**3.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생략)** 가.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 활용 ● 내용 (현행과 같음) ● 교육대상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략)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중~(생략)	**3.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생략)** 가.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 활용 ● 내용 (현행과 같음) ● 교육대상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략)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중~(생략)	- 지침 연도 현행화
	다.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활용 ● 내용 - 전국 65천여개 경로당을~(생략)	다.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활용 ● 내용 - 전국 67천여개 경로당을~(생략)	- 경로당 수 현행화
	4.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4) 행정사항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1]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생략) -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2]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생략)	**4.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4) 행정사항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1] 202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생략) -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2] 2022년 사회복지생활시설~(생략)	- 지침 연도 현행화
	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3) 행정사항 ● 경로당~(생략)~[별표1] 2021년~(생략) - 기타 수당 등에 대하여는 「2021년~(생략)」 [별표2] 2021년~ (생략)	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3) 행정사항 ● 경로당~(생략)~[별표1] 2022년~(생략) - 기타 수당 등에 대하여는 「2022년~(생략)」 [별표2] 2022년~(생략)	- 지침 연도 현행화
	5. 2021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가. 사업개요 ● ('21년 예산현황) 국고 34,198백만원 * 국고보조율 : 서울 10%, 그 외 25%	**5. 2022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가. 사업개요 ● ('22년 예산현황) 국고 68,396백만원 * 국고보조율 : 서울 20%, 그 외 50%	- 예산 현행화
	● (지원방법) ~(생략) - (생략) - (정부양곡) 경로당별~(생략)~('19년산 국산쌀) ~(생략) 다. 유의사항	● (지원방법) ~(생략) - (생략) - (정부양곡) 경로당별~(생략)~('21년산 국산쌀) ~(생략) 다. 유의사항	- 연도 현행화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겨울철~(생략) - (생략) - (생략) - 또한, 정부양곡(2020년산 국산쌀, 20kg)~생략	● 겨울철~(생략) - (생략) - (생략) - 또한, 정부양곡(2021년산 국산쌀, 20kg)~생략	
	[붙임] 2021년 정부양곡 지원방법 □ 개요 ● 공급가격 : 2020년산~(생략)~57,300원 ※2021년도~(생략)~제2020-111호, 2020.12.30.) 참조	[붙임] 2022년 정부양곡 지원방법 □ 개요 ● 공급가격 : 2021년산~(생략)~52,340원 ※2022년도~(생략)~제2021-93호, 2021.12.28.) 참조	- 금액 현행화
	〈서식1〉 2021년 정부양곡신청~(생략)	〈서식1〉 2022년 정부양곡신청~(생략)	- 연도 현행화
	〈서식2-1〉 2021년 경로당 정부양곡을~(생략) 2021.0.0 (서식2-2) 2021년 경로당 정부양곡을~(생략) 2021.0.0	〈서식2-1〉 2022년 경로당 정부양곡을~(생략) 2022.0.0 (서식2-2) 2022년 경로당 정부양곡을~(생략) 2022.0.0	- 연도 현행화
	8. 행정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생략) 제9조」~(생략)	**8. 행정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생략) 제15조」~(생략)	- 법조문 현행화
	● 경로당 책임보험~(생략)~ - 경로당~(생략)~ * 보험가입~(생략)~제58조제1항	● 경로당 책임보험~(생략)~ - 경로당~(생략)~ * 보험가입~(생략)~제58조제2항	- 법조문 현행화
	[별표1] 2021년 사회복지시설~(생략)~	[별표1]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략)~ 표 교체	- 해당 표 교체(붙임1)
	[별표2] 2021년 사회복지생활시설~(생략)	[별표2] 2022년 사회복지생활시설~(생략) 표 교체	- 해당 표 교체(붙임2)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마.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유형 구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생략)~ 구분하여 실시〈표1〉	마.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유형 구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생략)~ 구분하여 실시〈삭제〉	- 오류 수정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5.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생략)~

6. 행정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생략) 제9조」~(생략)</td><td>5.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생략)~

6. 행정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생략) 제15조」~(생략)</td><td>- 법조문 현행화</td></tr>
<tr><td>5-1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td><td>Ⅰ. 추진개요
4.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중략)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중략)</td><td>Ⅰ. 추진개요
4.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중략)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중략)</td><td>-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td></tr>
<tr><td></td><td>다. 서비스 제공절차
 </td><td>다. 서비스 제공절차
 </td><td>- 서비스 제공절차별 처리기간 추가</td></tr>
<tr><td></td><td>라. 대상자 구분
(중략)
<table><tr><th>대상자 군</th><th>서비스 내용</th></tr><tr><td>중점돌봄군</td><td>○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r><td>일반돌봄군</td><td>○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able></td><td>라. 대상자 구분
(중략)
<table><tr><th>대상자 군</th><th>서비스 내용</th></tr><tr><td>중점돌봄군</td><td>○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r><td>일반돌봄군</td><td>○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able></td><td>- 내용 명확화</td></tr>
</table>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I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다. 대상자 선정조사
(중략)
▌조사 시기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제외)</td><td>I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다. 대상자 선정조사
(중략)
▌조사 시기
●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휴일 제외)</td><td>- 조사기간 확대</td></tr>
<tr><td></td><td>마.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중략)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table><tr><th>대상자 군</th><th>서비스 내용</th></tr><tr><td>중점돌봄군</td><td>○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r><td>일반돌봄군</td><td>○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able></td><td>마.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중략)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table><tr><th>대상자 군</th><th>서비스 내용</th></tr><tr><td>중점돌봄군</td><td>○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r><td>일반돌봄군</td><td>○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td></tr></table></td><td>- 내용 명확화</td></tr>
<tr><td></td><td>사. 결정
(중략)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제외 건</td><td>사. 결정
(중략)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이 아닌 건</td><td>- 문구 수정</td></tr>
<tr><td></td><td>자. 서비스 안내
▌안내 방법 및 내용
(중략)
● 이용대기자
(중략)
- 이용대기자는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 대상자의 5% 범위까지 관리하고 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서비스 등 제공·관리</td><td>자. 서비스 안내
▌안내 방법 및 내용
(중략)
● 이용대기자
(중략)
- 이용대기자는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 대상자의 5% 범위까지 관리하고 이용대기자에 대해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노노케어, 후원·연계서비스 등 제공·관리</td><td>- 이용대기자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 추가</td></tr>
<tr><td></td><td>2. 서비스 제공
(중략)
▌기본방향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하되, 필요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td><td>2. 서비스 제공
(중략)
▌기본방향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하되, 필요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td><td></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대상자와 협의하여 일시적인 서비스 변경, 생략, 추가 제공 가능 (중략)	- 이용자의 상황, 재난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대상자와 협의하여 일시적인 서비스 변경, 생략, 추가 제공 가능 (중략)	- 서비스 변경제공 가능상황 추가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중략) ● 생활지원사는 병원입원*,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1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간 부재로 인해 서비스 제공 중지가 필요한 이용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 보고받은 전담사회복지사는 장기간 부재중인 대상자에 대해 노인맞춤돌봄 시스템에 입력하여 '미이용자' 처리, 서비스를 재개할 경우 '미이용자'에서 '이용자'로 입력 처리 (중략) ● 생활지원사는 부재기간 동안 대상자의 특이사항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중략) ● 생활지원사는 장기간 부재 등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 - (장기간 부재) 병원입원*,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1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간 부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 (이용자 요청) 건강상의 이유 및 코로나19 등의 감염우려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중지를 직접 요청(〈서식 제9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중지 요청서) ● 보고받은 전담사회복지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하여 '서비스 중지' 처리, 서비스를 재개할 경우 '서비스중'으로 입력 처리 *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서비스 상태 변경 (중략) ●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동안 대상자의 특이사항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	- 서비스 제공 중지가 필요한 상황 구분 및 문구 수정
	3. 재사정 ▌재사정 시기 ●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사정** ▌재사정 시기 ●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최소 연 1회 이상)	- 재사정 최소 횟수 제시
	4. 서비스 종결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4. 서비스 종결**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 서비스 종결 시 심의 생략 가능 상황 신설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신설)

(중략)</td><td>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단, 수행인력의 안전이 위협되어 서비스 종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생략 가능
(중략)</td><td></td></tr>
<tr><td></td><td>▌종결절차
● 종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td><td>▌종결절차
● 종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시·군·구 승인, 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td><td>- 서비스 종결절차에 대한 설명 추가</td></tr>
<tr><td></td><td>5. 사후관리
▌사후관리 주체
● 생활지원사
*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 지원</td><td>5. 사후관리
▌사후관리 주체
● 생활지원사
* 전담사회복지사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자원연계 등 지원</td><td>- 전담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설명 추가</td></tr>
<tr><td>5-4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td><td>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가.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td><td>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가.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td><td>-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수정</td></tr>
<tr><td></td><td>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다. 노인학대의 유형
● 행태적 분류
<table><tr><th>유형</th><th>정 의</th></tr><tr><td>:</td><td>이상 생략</td></tr><tr><td>방임</td><td>●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td></tr><tr><td>:</td><td>이하 생략</td></tr></table></td><td>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다. 노인학대의 유형
● 행태적 분류
<table><tr><th>유형</th><th>정 의</th></tr><tr><td>:</td><td>이상 생략</td></tr><tr><td>방임</td><td>●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td></tr><tr><td>:</td><td>이하 생략</td></tr></table></td><td>- 문장 수정</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라.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라.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그림 내 110 추가 - 업무절차 명칭 및 내용 삭제 (사례접수→신고접수) (경제상태→삭제)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생략) (중략) 5.「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략) 〈 추가 〉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생략) (중략)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략) 16.「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본문 하단의 세부내용에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항 표기 삭제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및 추가 (시행일: 2022.3.22.)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중략) ※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추가 〉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중략) ※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함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시행일: 2022.3.22.)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1조, 제39조의4 부터 제39조의9 까지, 제39조의11, 제39조의12, 제39조의15 부터 제39조의18까지, 제39조의20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6조, 제6조의2, 제31조, 제39조의4 부터 제39조의9 까지, 제39조의11, 제39조의12, 제39조의15 부터 제39조의18까지, 제39조의20	- 근거법령 추가
	4. 사업 추진방향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 보호 -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개선을	**4. 사업 추진방향**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 보호 -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 (삭제) 문장 수정 신고의무자에 의료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통한 노인학대 사례 발굴 확대 ● 노인학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노인 인권보호 - 학대피해 노인 및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강화	노인학대 사례 발굴 확대 ●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 학대피해 노인 및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	- 내용수정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 사업으로 하되, 노인인식 개선교육 (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시설 내 노인권리보호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시설학대 사례판정,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등(노인복지 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적용)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 사업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시설학대 사례판정,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등(노인복지 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적용)	- 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 수정 - 오탈자 수정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2) 기타업무 ●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 - 노인보호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법률 개정안 제안 - 노인보호사업 운영기준 검토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 발전 방안 제시 -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검토 - 민관 단체의 협력을 위한 의견제시 -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사업 정보 공유 - 대내외적 행사 공동 개최 및 협조 - 각종 운영기준 검토 - 전산시스템 운영 및 개선사항 제안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2) 기타업무 ● 노인보호사업 자문위원회 - 노인보호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법률 개정안 제안 - 노인보호사업 현안과제 논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 발전 방안 제시 -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검토 - 민관 단체의 협력을 위한 의견제시 -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사업 정보 공유 - 대내외적 행사 공동 개최 및 협조 - 각종 운영기준 검토 - 전산시스템 운영 및 개선사항 제안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내용 수정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추가 〉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치사항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에게 신고시설과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 관계임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 이후 현장조사, 사례이관 등 개입 절차 및 업무추진사항을 신고자에게 안내 2.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① 시·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공문으로 현장조사 동행 요청 ② 노인학대 의심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노인학대 의심 시설이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공문으로 현장조사 동행 요청 ③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공문으로 현장조사 결과보고 ④ 현장조사 실시 후 반드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사례판정 ⑤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정결과를 시·도 및 시·군·구에 공문으로 보고 3.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① 시·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이관 조치 보고 - 사례이관 절차를 준수하여 공문으로 보고 ② 노인학대 의심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노인학대 의심 시설이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 노인학대로 신고되었을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치사항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고지하고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될 것임을 공문으로 보고 ③ 사례를 이관받은 타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은 시·군·구 공무원에 현장조사 동행요청하고, 관련 정보 일체를 시·도에도 공문을 통해 내용 공유 ④ 시·군·구 공무원과 이관받은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실시 ⑤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공문으로 현장조사 결과보고 ⑥ 현장조사 실시 후 반드시 지역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사례판정 ⑦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정결과를 시·도 및 시·군·구에 공문으로 보고	- 위반사실 공표 내용 수정
	◉ 생활시설 학대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 명, 시설장 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 시·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동안 공표하여야 함(이하 생략) ◉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통보 해야함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생활시설 학대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 기관)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 명, 시설장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청처분 내용 등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생활시설 학대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 명, 시설장 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 오탈자 수정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띄어쓰기 수정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1.06.30.]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3의2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둔다.	- 노인복지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로 수정 - 법률근거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중략)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2의2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교육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및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교육)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교육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및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 업무 협조 관련 사항 (중략) ● (생략)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7호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 추가 〉 - 〈 추가 〉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 업무 협조 관련 사항 (중략) ● (생략)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7호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단, 현장조사와 사정, 사례판정을 완료하고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에 발급 - 발급절차 : 유선상 발급 요청→학대피해 노인 대면 상담(대리인 발급 요청시 인감을 포함한 위임장 등 명확한 확인 필요)→발급(해당 관공서로 공문과 함께 발송 가능)	-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중략) ◉상담원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중략) ◉상담원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구 수정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생략)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중략) • 노인보호전문상담원과정 : 100시간 이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생략)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중략) • 노인보호전문상담원과정 : 70시간 이하(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시간 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생략) ◉노인학대 통계보고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노인학대사례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익월 3일까지 보고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생략) ◉노인학대 통계보고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노인학대사례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익월 5일까지 보고	- 보고기한 변경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가.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가.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 그림 내 110 추가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추가) [시·도] (중략) • 〈 추가 〉 ■ 〈 추가 〉 [그림 추가]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시설학대 행정처분 결과를 광역 시도로부터 받아 취합(요양보험운영과) [시·도] (중략) • 시·도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공모 시 공모 신청서에 지도점검, 행정처분, 인권침해(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처분 및 지적받은 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위탁 심사평가 점수에 반영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기관 대상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시·도의 조치사항	- 행정처분 결과 취합 관련 내용 추가 - 시·도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공모 시 주의사항 추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 노인학대로 신고되었을 시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시·도는 현장조사 동행 및 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도록 조치 하여 조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 ①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시·도 노인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은 시·군·구 시설 담당 공무원 및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하고, 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함 ②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사·판정하도록 하며, 사례를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감독 ③ 기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자에게 학대의심시설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였는지 확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소속 시설 학대 신고·접수 시 업무체계도] ①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그림 추가) ② 시 ·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그림 추가)	시·도의 조치사항 추가 - 업무체계도 그림 추가 - 문장수정
	• 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시·군·구→광역 시·도→보건복지부)	• 시설 내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시·군·구→광역 시·도→보건복지부)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략) • 〈 추가 〉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략)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거부 및 사후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위반사실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법 위반(제39조의 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역할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동행 지원	등의 제공) 제2항 위반자,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5항 위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금액 산정 및 감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제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함(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 관할 지역내 시설학대 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이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현장조사 관련 내용 추가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략) ● (추가)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략)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거부 및 사후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위반사실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법 위반(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제공) 제2항 위반자,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5항 위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금액 산정 및 감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제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함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역할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 관할 지역내 시설학대 발생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동행지원 * (추가)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 관할 지역내 시설학대 발생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동행지원 *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이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있다.	- 의료기관 현장조사 관련 사항 추가
	■ 〈 추가 〉	■ 관할 지역내에서 노인학대 신고·접수된 시설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조치사항 • 시·군·구는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 ①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시·도 노인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②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사례를 이관받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③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에 행정조치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 노인학대로 신고되었을 시 시·군·구의 조치사항 추가
	◉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공유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발생한 날로 14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공유 통보할 수 있도록 함 해야함	- 행정처분 조치결과 통보 관련 내용 추가
	■ (추가)	■ 범죄경력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범죄경력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법률 근거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추가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생략) 다) 119 구급대 ◉ 노인학대사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생략) 다) 119 구급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 전문 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오탈자 수정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생략) 바) 법률 기관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 (추가) 사) 신고의무자 직군 등 (생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생략)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생략) 바) 법률 기관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3의2, 제39조의19제2항2의2에 의거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법률 지원 요청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시 협조 사) 신고의무자 직군 등 (생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학대피해노인 법률 지원 근거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 노인복지법령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직군 수정 및 추가
	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가. 예산 지원 ● 기본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 책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정부보조금은 지도점검 및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분 ※ 광역시·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확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증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추가)	**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가. 예산 지원 ● 기본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 책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하거나, 광역 시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 ※ 정부보조금은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분 ※ 광역시·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확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증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시 지방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우선 지원	- 예산지원 관련 사항 수정·보완
	● 사업비 사용방법 - (추가)	● 사업비 사용방법 - 미등록 단체 및 협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광역 시·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비 사용방법 관련 내용 추가
	- (추가)	-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계약관련 근거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9. 행정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중략) * 수탁자 선정시 예산의 10% 이상 부담하는 법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추가)	**9. 행정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중략) * 수탁자 선정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법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호에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업의 우선 위탁을 할 수 있음('22.3.25 시행)	- 구체적인 예산 부담 비율 근거 부족으로 문구 변경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관련 사항 추가
	9. 행정사항 (생략) ●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110 및 ☏129 적극 홍보	**9. 행정사항** (생략) ●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110 및 ☏129, 노인학대 신고앱 적극 홍보	- 노인학대 신고앱 개발에 따른 내용 추가
	9. 행정사항 (생략) 〈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35개소) 〉 (노인학대 상담전용 전화 1577-1389 또는 110, 129) (2020. 12. 31. 기준)	**9. 행정사항** (생략) 〈 중앙(1개소)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설치현황 〉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129) (2021. 12. 31. 기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개소(3개소)에 따른 설치현황표 수정 - 문구 수정 - 설치현황표 기준일자 수정
5-5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II. 설치 및 운영** **1. 지정 및 운영주체** - 쉼터 예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 * 단 후원금은 예외	**II. 설치 및 운영** **1. 지정 및 운영주체** - 쉼터 예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 ~~* 단 후원금은 예외~~	- 후원금도 명확히 구분
	II. 설치 및 운영 **3. 종자자 기준 및 업무내용** (생략) ● 요양보호사(3명)	**II. 설치 및 운영** **3. 종사자 기준 및 업무내용** (생략) ● 요양보호사(4명)	- 쉼터 교대제 인력 충원
	4. 운영 (생략) ● 회계관리 - (추가)	**4. 운영** (생략) ● 회계관리 -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	- 계약 관련 근거 추가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Ⅳ. 기타 행정사항 **5. 실적보고** • 쉼터 운영실적을 해당 시·도와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매달 3일까지)	**Ⅳ. 기타 행정사항** **5. 실적보고** • 쉼터 운영실적을 해당 시·도와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매달 5일까지)	- 보고기한 변경
5-6.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개요 (중략)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개요 (중략)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2) 법적근거 • (생략)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 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2) 법적근거 • (생략)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 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문구 수정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3)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3)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오기 수정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3)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3)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2. 인권교육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1) 인권교육기관의 종류 ● (생략)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인권교육**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1) 인권교육기관의 종류 ● (생략)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 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2. 인권교육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2) 인권교육기관 지정
•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 ①국가인권위원회,
②노인보호전문기관,
③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td><td>2. 인권교육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2) 인권교육기관 지정
•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 ①국가인권위원회,
②노인보호전문기관,
③한국보건복지인재원</td><td>-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td></tr>
<tr><td></td><td>2. 인권교육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3)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table><tr><th>구 분</th><th>역 할</th></tr><tr><td rowspan="2">노인보호전문기관</td><td>중앙</td><td>•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td></tr><tr><td>:</td><td>생략</td></tr><tr><td colspan="2">:</td><td>생략</td></tr><tr><td colspan="2">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td><td>• 생략</td></tr></table></td><td>2. 인권교육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3)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table><tr><th>구 분</th><th>역 할</th></tr><tr><td rowspan="2">노인보호전문기관</td><td>중앙</td><td>•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 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td></tr><tr><td>:</td><td>생략</td></tr><tr><td colspan="2">:</td><td>생략</td></tr><tr><td colspan="2">한국보건복지인재원</td><td>• 생략</td></tr></table></td><td>- 교육 대상자 및 실적 취합 대상 명확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td></tr>
<tr><td></td><td>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2) 교육방법
• (생략)
• 방문 교육 :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td><td>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2) 교육방법
• (생략)
• 방문 교육 :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td></tr>
<tr><td></td><td>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단체) 신청 또는 개별신청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td><td>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단체) 신청 또는 개별신청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방문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방문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방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3월~4월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edu.kohi.or.kr)에 공지 예정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방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3월~4월경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edu.kohi.or.kr)에 공지 예정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 : 2022.1.28.)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이수증 발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참석 2~3주 후 교육신청시 작성한 메일로 발송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이수증 발급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참석 2~3주 후 교육신청시 작성한 메일로 발송	
	2. 인권교육 라. 인권교육 강사 양성·관리 1) 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	**2. 인권교육** 라. 인권교육 강사 양성·관리 1) 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	- 법령 오기 수정
	4)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취득(유지) 후 최근 2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	4)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자격취득(유지) 후 최근 2년 동안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	- 문장수정
	2. 인권교육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1) 인권교육계획 수립·안내 ● 인권교육계획 안내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인권교육 사업안내와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안내(매년 1월까지)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인권교육계획 변경 -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하고 인권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게시하며,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안내하여야 함	**2. 인권교육**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1) 인권교육계획 수립·안내 ● 인권교육계획 안내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인권교육 사업안내와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매년 1월까지)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인권교육계획 변경 -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하고 인권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게시하며,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재안내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2. 인권교육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2)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2월 말까지 2021년 실적 제출 ● 제출대상 : 2021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시·군·구(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중략) ●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서식 3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 시: 서식 4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	**2. 인권교육**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2)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제출 ● 제출대상 : 전년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시·군·구(시설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중략) ●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서식 3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 시: 서식 4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	- 실적 제출기한 및 기준일자 수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 그림 수정(재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21년 안내</th><th>2022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비교]〉
<table>
<tr><th>구분</th><th>노인학대 예방 교육</th><th>인권교육</th></tr>
<tr><td>:</td><td>생략</td><td></td></tr>
<tr><td>교육 대상자</td><td>내용 생략</td><td>1. (생략)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td></tr>
<tr><td>:</td><td>생략</td><td></td></tr>
<tr><td>교육 방법</td><td>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td><td>내용 생략</td></tr>
</table></td><td>〈[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비교]〉
<table>
<tr><th>구분</th><th>노인학대 예방 교육</th><th>인권교육</th></tr>
<tr><td>:</td><td>생략</td><td></td></tr>
<tr><td>교육 대상자</td><td>내용 생략</td><td>1. (생략)
2.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td></tr>
<tr><td>:</td><td>생략</td><td></td></tr>
<tr><td>교육 방법</td><td>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사이트(1577 1389, 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td><td>내용 생략</td></tr>
</table></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

- 직장교육 방법 안내</td></tr>
<tr><td></td><td>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 [자주하는 질문] 〉
Q1.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 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중략)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Q2.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생략)
Q4.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td><td>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 [자주하는 질문] 〉
Q1.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 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중략)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생략)
Q4.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td><t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수정</td></tr>
</table>

세부사업명	2021년 안내	2022년 안내	변경사유
	A4. 인터넷 교육 및 집합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별로 교육 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생략) Q7.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생략)	A4. 인터넷 교육 및 집합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별로 교육 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생략) Q7.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7.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생략)	- 명칭 통일하여 수정
	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 [노인학대 예방 교육] 〉 Q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하나요? A1. 기관장 등 기관의 책임자 분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 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생략)	**2. 인권교육** 사. 지자체 역할 (중략) 〈 [노인학대 예방 교육] 〉 Q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하나요? A1. 주로 시설 및 기관장 등 기관의 관리자에 의해 진행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생략)	- 교육방법 안내

1-2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사업명		수혜자		비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건강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5등급)의 자	※ 제도시행 : '08. 7. 1
	● 노인복지시설 (의료)	·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로서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 시설이 노인요양 시설로 통합 ('08.4.4)
	● 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환자 및 가족	
	● 치매검진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인 자	진단·감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사업명		수혜자		비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 세부사업지침 추후 확정 및 통보예정
주거보장	● 노인복지시설 (주거)	·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통합 ('08.4.4)
사회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가병 방문지원ㅅ하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 '20년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60세 이상	없음	※ 지방이양사업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지방이양사업
	●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없음	

1-3 2022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총 계	3,929,253	4,369,823	440,570	11.2
[일 반 회 계]	3,675,108	4,130,697	455,589	12.4
● 공립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 지원	-	300	300	100
●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D)	3,995	5,147	1,152	28.8
● 양로시설 운영지원	42,639	1,222	△41,417	△97.1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8,934	9,104	170	1.9
● 노인보호전문기관	10,366	11,535	1,169	11.3
● 노인단체 지원	39,487	74,243	34,756	88.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18,299	436,571	18,272	4.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15,156	1,442,195	127,039	9.7
● 장사시설 설치	55,799	49,792	△6,007	△10.8
● 고령친화산업육성	2,332	2,672	340	14.6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710,700	2,035,442	324,742	19.0
● 노인요양시설 확충	66,917	61,990	△4,927	△7.4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484	-	-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232,978	214,016	△18,962	△8.1
● 치매관리체계 구축	204,741	207,674	2,933	1.4
● 노인건강관리	28,237	6,342	△21,895	△77.5
[응 급 의 료 기 금]	21,167	25,110	3,943	18.6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21,167	25,110	3,943	18.6

* 일반회계는 노인정책관 기본경비 제외예산